

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7월 16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제안이유

- 현재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나, 일부 시민이 재활운동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독점적 이용의 방지와 만성질환자 치료 및 저소득 계층 등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 조항을 삭제함.(안 제7조의2 및 별표 5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사용료를 면제하면 부작용이 모두 해소 되는가?	○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재활운동실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하며, 일반시민의 이용은 제한할 계획임.
○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고 낮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?	○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만성질환자나 저소득층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6호
의결 연월일	2007. 7. 19

제출년월일 : 2007년 6월 29일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현재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나, 일부 시민이 재활운동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독점적 이용의 방지와 만성질환자 치료 및 저소득 계층 등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 조항을 삭제함.(안 제7조의2 및 별표 5)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”를 “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보건법”을 “「지역보건법」”으로 하고, “국민건강증진법”을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국민건강보험법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중 “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”을 “운동처방센터”로 하며,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 단서 부분 중 “국민건강보험법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운동처방센터 수수료(제7조의2 관련)

구 분	기 준	수수료	비 고
운동처방센터	과정	5,500원 (2,800원)	최근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2,700원을 감액하여 징수함.

※ ()의 금액은 감액할 경우의 수수료임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역보건법</u> 제14조 및 <u>국민건강증진법</u>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<u>국민건강보험법</u>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.</p> <p>제7조의2(기타 수수료) <u>운동처방센터</u> 및 <u>재활운동실</u>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5에 의하여 징수한다.</p> 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 ①보건소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~5. (생략) 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	<p><u>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진료수가) ----- ----- 「<u>국민건강보험법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의2(기타 수수료) <u>운동처방센터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 ①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「<u>국민건강보험법</u>」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7.·8. (생략)</p> <p>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국민건강보험법</u>」 ----- ----- --.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